

## 지방세법개정을위한건의안심사보고서

1994. 10. 17  
운 영 위 원 회

## 1. 심 사 경 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10월 13일 임병섭 의원의 7인 발의
- 나. 회 부 일 자 : 1994년 10월 17일 운영위원회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1994년 10월 17일 제28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요지 (제안설명자 : 임병섭 의원)

## 가. 제안이유

95. 6월 출범되는 제2대 지방자치제를 앞두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구현은 무엇보다도 자치재정능력의 뒷받침 없이는 현행 특별시 및 직할시의 기초자치 단체인 자치구의 경우는 법인격이 있는 자치단체라기보다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을 대행하는 일선기관적 성격을 탈피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특별시나 직할시의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도 도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과 같이 현행세법상 주민세와 담배소비세에 대한 세원을 자치구세로 귀속시켜 자치구 재정으로 지역 특성발전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지방세법 제5조(특별시세 및 직할시세) 제2항 제3호(주민세), 제6호(담배소비세) 삭제
- 지방세법 제6조의 2(구세) 제2항에 제4호(주민세), 제5호(담배소비세) 신설

## 3.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지방세법개정을위한건의안

|          |     |
|----------|-----|
| 의안<br>번호 | 261 |
|----------|-----|

발의년월일 : '94. 10. 6  
발 의 자 : 임병섭 의원의  
7인

## 1. 주 문

현행 지방세법상 특별시세 및 직할시세로 되어 있는 주민세와 담배소비세를 자치구세로 개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한다.

## 2. 제안이유

우리 영등포구 의회의원 일동은 95년도 6월 출범되는 지방자치제를 앞두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구현은 무엇보다도 자치재정능력의 뒷받침 없이는 현행 특별시 및 직할시의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의 경우는 법인격이 있는 자치단체라기 보다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을 대행하는 일선기관적 성격을 탈피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특별시나 직할시의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도 도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과 같이 현행세법상 주민세와 담배소비세에 대한 세원을 자치구세로 귀속시켜 자치구 재정으로 지역 특성발전에 투자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법 제5조(특별시세 및 직할시세)와 제6조의 2(구세)를 건의문 같이 개정해 줄것을 건의한다.

## 3. 주요골자

- (1) 지방세법 제5조(특별시세 및 직할시세) 제2항 제3호(주민세) 제6호(담배소비세) 삭제
- (2) 지방세법 제6조의 2(구세) 제2항에 제4호(주민세) 제5호(담배소비세) 신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 행 | 개                 | 정 |
|---------------------|---|-------------------|---|
| 제 5 조 (특별시세 및 직할시세) |   | 제 5 조 (현행과 같음)    |   |
| ② 생략                |   | ② (현행과 같음)        |   |
| 3. 주민세              |   | 3. 삭제             |   |
| 6. 담배 소비세           |   | 6. 삭제             |   |
| 제 6 조의 2 (구세)       |   | 제 6 조의 2 (현행과 같음) |   |
| 3. 종합토지세            |   | 3. (현행과 같음)       |   |
| (신설)                |   | 4. 주민세            |   |
| (신설)                |   | 5. 담배소비세          |   |

## 地方稅法 改正을 위한 建議文

永登浦區議會 33人의 議員은 第2代 地方自治制의 出帆을 앞두고 自治區民의 福利增進과 自治團體의 自立基盤을 공고히 하기 위한 根本課題와 自治區 財政의 擴充이라고 判斷하여, 現行 地方稅法 第5條의 特別市稅 및 直轄市稅目중 住民稅와 담배消費稅를 同法 第6條의 2의 區稅目으로 改正해 줄 것을 建議한다.

1994. 10.

서울特別市永登浦區議會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1994. 10. 17.

운영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10월 6일 배기한의원외 6인발의
- 나. 회부일자 : 1994년 10월 17일 운영위원회 회부
- 다. 상정일자 : 1994년 10월 17일 제28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배기한 의원)

####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등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인 때에는 조사요구서에 의해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함(안 제3조)
-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안 제8조 제3항)
-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의장의 통보등으로 구청장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안 제8조 제5

항)

- 증인, 참고인이 방송, 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9조 제1항)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유재한)

지방자치법(94. 3. 16)과 동법시행령(94. 7. 6)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기간이 3일에서 7일로 늘어났으며, 내용의 불합리로 인하여 삭제된 조항과 신설된 조항 및 실제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한 개정안이라 보아집니다.

첫째, 제2조(감사)에 다만의 단서는 종전 상임위원 또는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감사를 하던 것을 본회의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제2조 제4항의 신설은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 또는 조사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상위에서나 특별위원회에서와 같이 감사 및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즉시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셋째, 제3조(조사)에 있어서 3항 후단의 내용은 폐회 또는 휴회중에 의원발의 조사요구로써 본회의 소집요구를 갈음하는 것으로 중복회의요구를 피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넷째, 제5조 제1항 3호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법 제138조 지방공기업이 아닌 지방공사 및 공단의 설립)에 대한 대상이 감사 및 조사에서 삭제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4분의 1이상 출자로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만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제8조 제1항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과 출석·증언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여 출석·증언에 응하지 못할 때 이유를 1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을 정하고 증인이 증언할 때 선서케 함으로써 양심에 따라 진실을 말하게 하고, 출석이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 그 절차와 결과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섯째, 증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언이나 진술의 내용을 본인의 요구가 있는 때 그 일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또 증인에게 실비보상하는 규정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